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 강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임 용

제3조(자격)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한 자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
2. 만 65세 이하인 자

제4조(임용) ① 강사는 각 학과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② 강사를 신규임용하기 위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면접심사는 필요한 경우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임용시기) 강사의 임용시기는 3월 1일과 9월 1일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임용기간) ①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교원(강사, 겸임교원 등 포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
2. 6개월 이하 연구년
3.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할 경우

③ 강사에게는 신규임용일 이후 휴직·정직기간 등을 포함하여 총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되,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임용절차에 따른다.

제7조(임용절차) ① 강사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 강사를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5일 이상 학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공고한다.

③ 강사의 신규채용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치되, 면접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신규채용 심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1-1, 별표1-2와 같다.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① 강사의 임용·재임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해당 학과 교수회의가 대신하며, 교양 교원은 교양대학 교수회의에서 심사한다. (2023.03.15.개정)

③ 심사위원회는 기초 및 전공심사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항목 등을 종합하여 심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과 심사위원회에서는 기초 및 전공심사에서 3배수 내외로 합격자를 선발한 후 면

접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학과 심사위원회는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임용 예정인원의 3배수까지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임용 후보자(예비 순위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한 후 총장에게 제청하여 확정한다.

제9조(제출서류) 신규임용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강사임용지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교육경력증명서 1부
5. 연구실적증빙(해당자) 각 1부.

제10조(예비순위자 임용) 학기 개시일 전 30일 이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한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 순으로 임용한다.

1. (1단계) 공개채용 지원자 중 일정기준을 충족한 자를 순위대로 임용하되, 연락두절 등의 경우 다음 순위자를 임용
2. (2단계) 해당과목 강의가 가능한 기 임용된 강사에게 주당 9시간 범위 내에서 강의를 부여하고 강의 가능한 기 임용강사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임용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의 신규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2. 이 규정 제3조의 강사의 임용자격에 미달된 경우
3. 담당하기로 한 과목의 폐강 또는 과목이 속한 학과의 폐과 등 교육과정 상 불가피하게 강의를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4. 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 근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

제12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강사로 임용 될 수 없다.

② 재직 중인 강사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제13조(당연퇴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

1. 재임용이 거부된 자.
2.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제6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으로 임용한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
4.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5.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자(이 경우 만 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14조(면직)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정관,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학과가 폐지되거나 담당 교과목 모두가 폐강한 경우
5. 근무 태도가 불량하여 교학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6.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8.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강사가 면직사유로 인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15조(임용계약) ① 총장은 강사를 임용할 때에 임용기간,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근무조건, 면직사유, 재임용 절차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

용할 수 있다.

②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1부는 배부하고 1부는 본교에서 보관한다.

제3장 재임용

제16조(재임용 신청) ①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②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임용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재임용 심의) ① 강사의 재임용 심의 신청에 대하여 학과 심사위원회 심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당 강사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그 강사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강사에게 통지한다.

② 별표2의 재임용 기준점수를 충족한 자에 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재계약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된 강사는 당연퇴직한다.

④ 수업평가 결과가 2회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⑤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해당 강사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날짜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⑥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가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재임용 거부) 강사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경우 총장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담당 교과목 모두가 폐지된 경우
2. 소속 학과가 폐과한 경우
3.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규 전임교원을 임용한 경우
4. 계약으로 정한 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5. 기타, 임용계약서의 재임용 불가에 해당하는 경우

제4장 의무 및 복무

제19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사립학교법 및 교육관계 법령과 본 대학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강의와 이에 따르는 수업계획서 작성 및 공지, 성적평가 및 입력, 의무교육 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본교 외의 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교학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강사는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코자 하는 경우 사직 2개월전까지 교학처에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교수시간) ① 강사는 주당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 주당 9시간까지 할 수 있다.

② 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시간은 정규학기 강의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1조(처우) ① 강사의 급여는 학기 단위로 산정하여 학기 중 급여와 방학 중 수업준비수당으로 지급하며, 강사료는 당해연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9.8.28.개정)

② 강사료는 당월분을 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강사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퇴직금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제22조(휴직) ①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은 휴직 신청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휴직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23조(휴직기간의 만료 등) ①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하는 강사는 자동 면직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휴직의 효력) 휴직기간 중 강사의 신분은 보장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25조(징계)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강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징계양정은 교원의 징계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② 강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1. 교육관계법령 및 본교 제규정에 위반하여 강사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3. 성희롱·성폭력, 기타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③ 총장은 강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강사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 강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부 칙

(시행일)① 이 규정은 2019년 7월23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에 따라 「강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신규 임용 심사 평가표(기초·전공심사용)

지원자 성명				모집전공		
심사 항목	배점	세부 심사 항목			심사점수	
기초 심사	전공영역의 일치성 및 적합성	X	최종 학위	적합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적합
			석사			
			박사수료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박사					
전공 심사	교육경력	50	· 교육경력 2년 이상 (50점) · 교육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 (45점) · 교육경력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40점) · 교육경력 6개월 미만인 경우 (35점)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 심사	20	· 논문, 저서 등의 연구실적물이 3편 이상인 경우(20점) · 논문, 저서 등의 연구실적물이 2편 이상인 경우(17점) · 논문, 저서 등의 연구실적물이 1편 이상인 경우 (14점) ※ 학위논문 제외, 공저의 경우도 1편으로 인정 가능 ※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지 이상이어야 함			
	최종 학력	30	· 박사졸업의 경우 (30점) · 박사수료의 경우 (25점) · 석사졸업의 경우 (20점)			
합계		100				

- 기초심사에서 모집전공과 지원자의 전공은 석사·박사수료 및 박사학위 중 하나만 일치하여도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며,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평가함
- 기초심사에서 적합한 자에 한하여 전공심사를 진행하며, 전공심사에서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선정
- 전공심사에서 3배수 내외를 선정한 후 면접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면접심사는 생략 가능
- 전공심사는 해당 학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심의토록 함.

전공불일치에 대한 의견(기초·전공심사에 심사위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표 1-2】

신규 임용 심사 평가표(면접용)

지원자 성명		모집전공	
---------------	--	-------------	--

심사 항목	평점				
	A (10점)	B (7점)	C (5점)	부적합	계
1. 용모, 품위, 행동양식					
2. 교육관 및 사명감, 대학발전기여 가능성					
3. 사고의 건전성, 판단능력					
합계					

- 심사위원별로 개별 평가하여 작성함.
- 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항목이 1개 이상이면 임용 제외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	--	-----------	--	-----------	--	------

【별표 2】(2022.2.10.개정)

강사 재임용 평가표

소속		성명		평가기간	201 . . . ~ 201 . . .
----	--	----	--	------	-----------------------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점수
수업계획서 및 수업개선계획서 작성	· 수업계획서를 기한내 입력하였는가? (기간 내 미입력 시 강좌당 3점 감점)	10	
수업일수 및 이수시간 준수	· 수업일수 및 이수시간을 준수하였는가? (미준수시 1건당 3점 감점)	10	
휴강 및 보강 준수	· 휴강 및 보강 계획서를 기한내 제출하였는가? (미준수 시 1건당 3점 감점)	10	
수업평가 결과 ※ 5점 만점	· 수업평가 평점 4.5 이상	40	40
	· 수업평가 평점 4.0 이상 ~ 4.5 미만	35	
	· 수업평가 평점 3.5 이상 ~ 4.0 미만	30	
	· 수업평가 평점 3.5 미만	0	
성적입력기한 준수	· 성적을 기한내 입력하였는가? (기간 내 미입력 시 강좌당 3점 감점)	10	
교수법 특강 참석	· 강사 대상 교수법 특강에 참석하였는가? (불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1건당 3점 감점)	10	
심사위원 평가	· 교육관계법령 및 규정의 준수, 강사로서의 품위 등	10	
소계		100	

- 심사 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재임용 적격으로 인정. 단, 심사결과가 70점 이상일 경우라도 수업평가 결과가 2회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임용 불가함
- 수업평가점수 : 5점 만점 기준이며, 해당 강사의 학기별 수업평가점수 평균으로 평가함
- 강사 재임용 평가표는 심사위원 과반수이상이 참석하고 참석교원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 학과장 교수가 작성

[70점 미달자에 대한 의견]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